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급여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자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치매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자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①목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일 이후 15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요양원 입소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쌍방 모두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회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센터 입소자의 계약기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을 준수하여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기타의 계약관련사항은 요양원 규정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단위:원)

구 분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일 반 (20%)		경 감 (12%)		경 감 (8%)	
		현행	'26.1.1부터	'26.1.1부터	'26.1.1부터		
본인 부담 금	1등급	542,700	558,420	335,052	223,368		
	2등급	503,460	518,040	310,824	207,216		
	3~5등급	475,440	489,270	293,562	195,708		
비 급 여	식재료비/간 식비	402,000원(간식비 포함)		402,000원(간식비 포함)			
합 계	1등급	917,700	960,420	737,052	625,368		
	2등급	878,460	920,040	712,824	609,216		
	3~5등급	850,440	891,270	695,544	597,696		

*상급침실료(변동없음)

1인실: 1일 15,000원 x 30일= 450,000원 / 2인실: 8,000원 x 30일= 240,000원

※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변동없음)

5. 급여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①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비용 변경 시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이용계약을 재작성하여 발급한다.

② 비급여 항목 비용 인상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에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지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이용계약을 작성하여 발급한 후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③ 수급자(보호자 또는 연고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의 발생 시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상세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한 보호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비용 발생 시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상세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⑤ 수급자의 퇴소 시 이용료의 잔액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한다.

6.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	입소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통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②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선용 프로그램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을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입소자로 인하여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관찰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서면으로 시설의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⑦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특히, 스스로 움직여 사고 발생시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6)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 입소자의 특이질환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8)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관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